- 경남 120 민원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-

종합계약 협정서(공동집행방식)

경상남도, 창원시, 김해시에서 민원안내를 위해 공동 이용하는 "경남 120 민원콜센터 시스템"의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정서의 목적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"2"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용역의 계획, 발주, 입찰, 계약체결, 감독 및 준공검사,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.

1. 용 역 명 : 2027년 경남 120 민원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
2. 용역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
3. 용 역 비 : 125,314,000원(금일억이천오백삼십일만사천원)
4. 유지보수 대상 : 경상남도, 창원시, 김해시 콜센터 시스템
 - H/W : 서버,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, 교환기 등 일체
 - S/W : 상용 및 응용 소프트웨어 등 일체

제2조 (관련기관협의체)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,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
1. 명칭 : 경남 120 민원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협의체
2. 관련기관
 가. 경상남도(소재지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)
 나. 창원시(소재지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)
 다. 김해시(소재지: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)

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경상남도로 한다.

제3조 (실무협의체) 본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, 협정서의 변경 및 세부내용은 실무협의체에서 결정·처리한다.

제4조 (책임) ① 입찰의 실시,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 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
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.

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, 공통되지 않는 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.

제5조 (효력기간)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(준공)로 종결된다.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·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.

제6조 (감독 및 검사)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.

제7조 (관련기관 예산분담) 본 용역의 소요예산은 경상남도 59,996,000원(47.9%), 창원시 36,796,000원(29.4%), 김해시 28,522,000원(22.7%)를 분담한다.

제8조 (대가지급) 선급금·대가 등은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.

제9조 (하자담보책임)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 기관이, 공통되지 않는 용역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구성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.

제10조 (기타사항) ① 본 협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② 협의체 관련기관은 공동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정서 3부를 작성하여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10월 일

경상남도 GYEONGNAM 창원특례시 CHANGWON SPECIAL CITY 김해시 GIMHAE

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장 강기윤 김해시장 정영두